

- 14. 자산운용사 최근 3년간 수익성 분석 현황
- 15.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인·허가 현황
- 16.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폐업 현황
- 17. 자산운용사 허가기준, 폐업기준 및 그 법적 근거

1. 최근 3년간 수익성 분석*

회계연도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ROA**
2003	1,322	901	5.78%
2004	677	246	1.53%
2005	3,342	2,453	14.34%

* 감사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함

** ROA = 당기순이익/자산평잔

- 2004 회계연도는 CJ자산운용의 영업권 일시상각(215억원)의 발생으로 이익이 감소하였고,
- 2005 회계연도에는 적립식펀드의 인기에 따라 운용보수율이 높은 주식형펀드가 급격히 증가(10.5조원→34.8조원)함에 따라 이익이 큰폭으로 상승하였음

2.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인·허가 현황

	회사명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일	비고
1	홍국투자신탁운용(주)	2000-02-11	
2	동양투자신탁운용	2000-06-26	
3	대한투자신탁운용	2000-06-27	
4	한국투자신탁운용	2000-06-28	
5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	2000-06-29	
6	아이투자신탁운용	2000-07-24	
7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2000-07-24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2001-01-19	
9	슈로더투자신탁운용	2001-07-19	
10	PCA투자신탁운용	2001-08-10	굿모닝투신 지분인수
11	도이치투자신탁운용	2002-06-14	
12	농협CA투자신탁운용	2003-03-28	
13	KTB자산운용	2004-01-04	
14	플러스자산운용	2004-01-04	
15	알파에셋자산운용	2004-01-05	
16	현대와이즈자산운용	2004-02-03	
17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2004-03-29	
18	피닉스자산운용	2004-03-30	
19	칸서스자산운용	2004-09-10	
20	피렐리티자산운용	2004-12-10	
21	기은SG자산운용	2004-12-24	
22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2005-05-13	
23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2005-11-11	
24	한국밸류자산운용	2006-04-14	
25	다올부동산자산운용	2006-06-23	
26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2006-07-21	

* 회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상의 날짜임

3.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폐업현황

- 2001년 : 리젠티 폐업(1건)

4. 자산운용사 허가기준, 폐업기준, 법적 근거

< 허가기준 >

(1) 회사 자격 요건(법§5①제1호, 시행령§11)

-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고,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함

(2) 전문인력 요건(법§5①제2호, 시행령§17)

- 운용전문인력은 법§8 ①항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거나 소정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 시행령§17①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물적 요건(법§5①제2호, 감독규정별지제7호)

-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판매회사 등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설비와 독립하여 운영, 사무실 등 업무공간 확보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법§5①제3호)

(5) 주요출자자 요건(법§5①제5호, 시행령§132④, 감독규정별지§8)

- 주요출자자가 법시행령 별표1 제1호마목과 감독규정 별지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요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주요출자자의 세부 요건(감독규정 별지 8호)

1. 자산운용업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5조제2항 관련)

가.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1호 관련)

-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2)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 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 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호 나목(2)의 기준을 충족할 것
- (3)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의 소속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4) 주요출자자의 출자자금은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자산매각 또는 내부유보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차입(회사채·기업어음 발행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포함)으로 조성한 자금이 아닐 것
- (5)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가)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최근 5년간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2호 관련)

- (1) 제1호 가목(1)·(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 (3)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체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 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 (4)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다.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3호 관련)

- (1) 법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 (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다) 기타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 (3) 제1호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차로 등록된 사실 <개정 2005. 10. 7>
 - (다)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정지의 요구(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정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라)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마) 최근 5년이내에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로 다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다음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별표1 제4호 관련)

- (1)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호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4)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조직의 자율규제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5)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주요출자자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주요출자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로서 인수전 피인수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인수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인수이후 피인수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기타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요출자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요출자자가 지분변동등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바. 주요출자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나목 관련)

- (1)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제1호다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제1호나목(4)(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제1호다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최대주주인 법인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재임(직)중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1) 내지 (6)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16>

2.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시행령 제13조제4항단서 관련)

-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이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라 한다)에는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 등을 감안하여 제1호 가목(5)(나)와 관련된 요건(이하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이라 한다)만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업 겸영허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및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7조, 제8조 관련)

- 가.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에 관하여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준용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 합병 등의 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허가취소 및 폐업 기준 >

허가취소 기준[간투법 제167조]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신탁·증권 그 밖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
4.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6. 허가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8.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9.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폐업기준[간투법 제18조]

- 회사는 폐업의 경우 금감위 인가를 득해야 하며,
- 금감위는 이 경우 폐지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지 여부, 간접투자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간투법 등 관련 법령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